

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건설과장 송기채

나. 폐 지 사 유

- 당초 농지개량 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수리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현재 수리사업 시행에 있어 30여년전의 동 조례 제.개정 취지와 달리 시대적 변화 욕구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는 실제 수리사업 실시에 있어 현품의 부과나 울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동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없는 바,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1부. 끝.

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7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에 규정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현행 징수하지 않고 있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